

#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(국비-경상)

## 1 기본 현황

### □ 사업개요

회 계	일반회계		
사업기간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연례반복		
사업내용	○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		
사업비 (당해년도)	166,006천원	(국비)83,003천원	(사비)83,003천원
		기타 (예산 외) (구비)	(기타)

### □ 사업 담당자

실·국	부서명	과 장	팀장	주무관
여성가족정책실	여성권익담당관	김순희 2133-5320	김향자 2133-5326	이정준 2133-5327

※실국 및 부서명은 예산서 기준으로 작성되어 현재부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## 2 예산 설명

### □ 예산 총괄

(단위 : 천원, %)

구 분	2019예산액 (A)	2020예산액 (B)	증감 (B-A)	
				(B-A)*100/A
계	(x97,650) 195,300	(x83,003) 166,006	(xΔ14,647) Δ29,294	(xΔ14) Δ14
사회복지사업보조	(x97,650) 195,300	(x83,003) 166,006	(xΔ14,647) Δ29,294	(xΔ14) Δ14

### □ 산출근거

과목구분	2020년 예산내역	
사회복지사업보조	○ 의료비 수시 지원 166,006,000원	= 166,006천원

### 3 사업 설명

사업목적

- 신체적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가정폭력피해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 강화

사업근거

-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, 동법 시행령 제6조, 동법 시행규칙 제17조
- 여성가족부 여성 아동 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

사업내용

- 사업기간 : 연중
- 지원대상 : 가정폭력피해자
- 사업수행주체 : 자치구, 사회복지법인(상담소, 보호시설 등 운영시설)
- 추진방법 : 청구에 따라 의료비 재배정
- 사업의 주요내용 : 가정폭력으로 인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의료비 지원 가능

추진경위

- 2010년 관련법 개정으로 보호시설 입소 피해자 및 동반아동에 대한 의료비 지원 근거 마련

2020년도 추진일정

(단위 : 천원)

사업추진절차	추진기간	예산집행금액	추진세부내용
계		166,006	
의료비 지원	2020.01~2020.12	166,006	수시 재배정 지원

### 4 사업 효과

최근 3년 추진실적

2017년도	○ 신체적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의료비를 수시 지원
2018년도	○ 신체적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의료비를 수시 지원

2019년도	○ 신체적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의료비를 수시 지원
--------	---

□ 향후 기대효과

○ 가정폭력피해자의 정신적 신체적 치료회복으로 권익 증진

**5** 최근 3년 결산 현황

(단위 : 천원)

연도	최종예산	전년이월	예산변경	예산현액	집행액	차년이월	집행잔액
2016	(x150,000) 300,000	(x-)	(x-)	(x150,000) 300,000	(x73,746) 147,491	(x-)	(x76,254) 152,509
2017	(x132,000) 264,000	(x-)	(x-)	(x132,000) 264,000	(x69,777) 139,429	(x-)	(x62,223) 124,571
2018	(x100,000) 200,000	(x-)	(x-)	(x100,000) 200,000	(x76,049) 152,097	(x-)	(x23,951) 47,903